

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규영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조규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상목, 문상모, 이성희, 이혜경,  
문형주, 김기만, 김구현, 김창원,  
김진수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집단건물,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적환장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제17조제3항 중 “영 제15조제5항제15호” 를 “영 제15조제5항제16호” 로 한다.(안 제17조제3항)

나. 제17조제3항 표 중 공연장 매표소란 다음에 공동 적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(안 제17조제3항)

공동 적환장	철골조립조	100제곱미터이하	
--------	-------	-----------	--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축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영 제15조제5항제15호” 를 “영 제15조제5항제16호” 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용 도	구 조	면 적	기 타
관리사무실(주차장, 화원, 체육시설)	컬러알루미늄 새시	30제곱미터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층에 한함</li> <li>· 옥상설치 불가</li> <li>·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</li> <li>· 다만,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</li> </ul>
제품 야적장	철골조립조	500제곱미터이하	
기계보호시설	철골조립조	300제곱미터이하	
공연장 매표소	목재 또는 알루미늄 새시	5제곱미터이하	
공동 적환장	철골조립조	100제곱미터이하	
차양시설 · 비가리개 시설	제한 없음	제한 없음	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)설치 하는 것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제17조(가설건축물) ① - ② (생략)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“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.				제17조(가설건축물) ① - ② (생략)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“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.			
용도	구조	면적	기타	용도	구조	면적	기타
관리사무실(주차장, 화원, 체육시설)	컬러알루미늄새시	30제곱미터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층에 한함</li> <li>· 옥상설치 불가</li> <li>·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</li> <li>· 다만,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</li> </ul>	관리사무실(주차장, 화원, 체육시설)	(현행과 같음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li>·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
제품야적장	철골조립조	500제곱미터이하		제품야적장	(현행과 같음)		
기계보호시설	철골조립조	300제곱미터이하		기계보호시설	(현행과 같음)		
공연장 매표소	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	5제곱미터이하		공연장 매표소	(현행과 같음)		
				<b>&lt;신설&gt;</b>	<b>적환장</b>	<b>철골조립조</b>	
차양시설 · 비가리개 시설	제한 없음	제한 없음	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)설치 하는 것	차양시설 · 비가리개 시설	(현행과 같음)		

#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없음.

#### 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조규영